|  |  |  |
| --- | --- | --- |
|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 관리 잠행방법》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재건(2012) 102호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국, 물가국, 신강(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 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주관부문, 가격주관부문, 국가전력네트워크공사, 중국남방전력방유한책임공사, 내몽고(内蒙古)자치구 전력유한책임공사: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관리를 규범화하고 자금의 사용효율을 제고한다.《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및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재생에너지 발전기금 징수 및 사용관리의 잠행방법>인쇄배포에 관한 통지》(재종 [2011] 115호)에 근거하여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이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 관리의 잠행방법》을 공동 제정한 바, 이를 인쇄배포하며,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하길 바란다. 첨부 :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 관리의 잠행방법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에너지국2012년 3월 14일 첨부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 **관리 잠행방법****제1장 총 칙****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 및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재생에너지 발전기금 징수 및 사용관리의 잠행방법>인쇄배포에 관한 통지》(재종 [2011] 115호)에 근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칭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풍력발전, 바이오매스발전(농업/임업 폐기물의 직접연소 및 기화발전, 쓰레기소각 및 쓰레기 매립가스발전, 메탄가스발전 포함), 태양에너지발전, 지열에너지발전 및 해양에너지발전 등을 가리킨다. **제2장 보조프로젝트 승인****제3조** 보조금을 신청하는 프로젝트는 아래 조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1)《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재생에너지 발전기금 징수 및 사용관리의 잠행방법>인쇄배포에 관한 통지》규정에 속하는 보조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이미 심사, 비준 또는 비안을 완료하고 국가에너지국 심사를 거쳐 확인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심사 승인방법은 국가에너지국이 별도로 제정한다.(3) 국가의 재생에너지 가격정책에 부합하여 전력가격에 대하여 가격주관부문의 심사 회답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본 방법 제3조에서 규정한 프로젝트에 부합하며, 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재생에너지 발전네트워크 연결공정 프로젝트단위,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전력시스템 프로젝트단위는 속지원칙에 근거, 소재지 성급의 재정, 가격, 에너지 주관부문에 보조신청(서식은 첨부 1 참조)을 한다. 성급의 재정, 가격, 에너지 주관부문은 초기심사 후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에 공동으로 보고한다. **제5조**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은 지방이 문건을 보고한 것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자금 보조목록에 포함시킨다. **제3장 보조 표준****제6조**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의 배전량의 보조표준은 재생에너지 배전가격, 탈황연탄(脱硫燃煤)단위의 전력가격 측량 등의 요인에 따라 확정한다. **제7조**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는 전력네트워크 시스템에 포함시켜 발생되는 공정투자 및 운행유지비에 대하여 배전량에 따라 알맞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표준은 다음과 같다: 50km이내는 1전(分钱)/kw시, 50-100km는 2전(分钱)/kw시, 100km 및 그 이상 거리에서는 3전(分钱)/kw시**제8조** 국가투자 또는 건설을 보조하는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전력시스템의 전력판매 가격은 동일 지역 분류의 전력판매가격을 집행하고, 그 합리적인 운행 및 관리비용이 전력판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에 부가하는 방식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 표준은 잠정 연간 0.4만 위안/kw이다. **제9조**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 네트워크연결공정 및 공공 재생에너지의 독립전력 시스템 가격정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서로 상이한 유형의 재생가능 에너지발전의 특징 및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재생가능 에너지개발 이용 및 경제적 합리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기술 발전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생가능 에너지법》의 유관 규정에 근거, 입찰 등 경쟁방식을 통해 확정된 배전가격은 낙찰되어 확정된 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단, 동일한 유형의 재생가능 에너지발전 프로젝트의 정부 가격책정 수준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제4장 예산관리 및 자금지불****제10조** 중앙정부기금의 예산관리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재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과 협의하여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의 연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다. **제11조**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은 원칙적으로 분기별 사전배포, 연말정산을 시행한다. 성급 전력네트워크기업, 지방의 독립된 전력네트워크기업은 본 급(级) 전력네트워크 범위 내 포함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자금 보조목록 및 네트워크발전 프로젝트와 네트워크 연결 공정의 유관상황에 따라 매 분기의 마지막 달 10일 전에 분기별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 신청서(규격은 첨부 2를 참조)를 제출하고 소재지 성급의 재정, 가격, 에너지 주관부문의 심사를 거쳐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에 보고를 한다.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프로젝트는 연도 종료 후 결산에 따라 보고하고 자금신청을 한다. **제12조** 재정부는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수입, 성급 전력네트워크기업 및 지방의 독립된 전력네트워크기업의 자금신청 등의 상황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보조자금을 성급 재정부문에 지급한다.**제13조** 성급 전력네트워크기업, 지방의 독립 전력네트워크기업은 재생에너지의 배전가격 및 실제 구매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배전량에 따라 월별로 재생에너지 발전기업과 전력요금을 결산해야 한다. **제14조** 연도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성급 전력네트워크기업, 지방의 독립 전력네트워크기업,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프로젝트단위는 전년도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 정산 신청서(서식은 첨부 3 참조)를 작성하여 성급 재정, 가격, 에너지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 전력요금 결산리스트 또는 전력량 결산리스트 등 유관 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성급의 재정, 가격, 에너지 주관부문은 기업이 문건을 보고하여 초기심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초심의견을 제기하고,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에 보고한다. **제16조** 재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과 협의하여 감사지역을 조직하여 문건을 보고하며, 보조자금에 대하여 결산을 진행한다. **제5장 부 칙****제17조** 본 방법은 재정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과 협의하여 해석을 담당한다. **제18조** 본 방법은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2012년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의 보고, 심사, 지급 등은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첨부 : 1.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자금 보조목록 신청서 2.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보조자금 분기 신청서 3.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보조자금 정산 신청서 |  | **关于印发《可再生能源电价附加补助资金管理暂行办法》的****通知**财建〔2012〕102号各省、自治区、直辖市财政厅（局）、发展改革委、能源局、物价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发展改革委、能源主管部门、价格主管部门，国家电网公司、中国南方电网有限责任公司、内蒙古自治区电力有限责任公司：　　为促进可再生能源开发利用，规范可再生能源电价附加资金管理，提高资金使用效率，根据《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和《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国家能源局关于印发<可再生能源发展基金征收使用管理暂行办法>的通知》（财综〔2011〕115号），财政部、国家发展改革委、国家能源局共同制定了《可再生能源电价附加补助资金管理暂行办法》，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附件：可再生能源电价附加补助资金管理暂行办法　　　　　　　　　　　　　　　　　　　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国家能源局　　　　　　　　　　　　　　　　　　　　　　二○一二年三月十四日附件：**可再生能源电价附加补助资金管理****暂行办法****第一章　总　则**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和《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国家能源局关于印发<可再生能源发展基金征收使用管理暂行办法>的通知》（财综〔2011〕115号），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可再生能源发电是指风力发电、生物质能发电（包括农林废弃物直接燃烧和气化发电、垃圾焚烧和垃圾填埋气发电、沼气发电）、太阳能发电、地热能发电和海洋能发电等。**第二章　补助项目确认**　　**第三条**　申请补助的项目必须符合以下条件：　　（一）属于《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国家能源局关于印发<可再生能源发展基金征收使用管理暂行办法>的通知》规定的补助范围。　　（二）按照国家有关规定已完成审批、核准或备案，且已经过国家能源局审核确认。具体审核确认办法由国家能源局另行制定。　　（三）符合国家可再生能源价格政策，上网电价已经价格主管部门审核批复。　　**第四条**　符合本办法第三条规定的项目，可再生能源发电企业、可再生能源发电接网工程项目单位、公共可再生能源独立电力系统项目单位，按属地原则向所在地省级财政、价格、能源主管部门提出补助申请（格式见附1）。省级财政、价格、能源主管部门初审后联合上报财政部、国家发展改革委、国家能源局。　　**第五条**　财政部、国家发展改革委、国家能源局对地方上报材料进行审核，并将符合条件的项目列入可再生能源电价附加资金补助目录。**第三章　补助标准**　　**第六条**　可再生能源发电项目上网电量的补助标准，根据可再生能源上网电价、脱硫燃煤机组标杆电价等因素确定。　　**第七条**　专为可再生能源发电项目接入电网系统而发生的工程投资和运行维护费用，按上网电量给予适当补助，补助标准为：50公里以内每千瓦时1分钱，50-100公里每千瓦时2分钱，100公里及以上每千瓦时3分钱。　　**第八条**　国家投资或者补贴建设的公共可再生能源独立电力系统的销售电价，执行同一地区分类销售电价，其合理的运行和管理费用超出销售电价的部分，通过可再生能源电价附加给予适当补助，补助标准暂定为每千瓦每年0.4万元。　　**第九条**　可再生能源发电项目、接网工程及公共可再生能源独立电力系统的价格政策，由国家发展改革委根据不同类型可再生能源发电的特点和不同地区的情况，按照有利于促进可再生能源开发利用和经济合理的原则确定，并根据可再生能源开发利用技术的发展适时调整。　　根据《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有关规定通过招标等竞争性方式确定的上网电价，按照中标确定的价格执行，但不得高于同类可再生能源发电项目的政府定价水平。**第四章　预算管理和资金拨付**　　**第十条**　按照中央政府性基金预算管理要求和程序，财政部会同国家发展改革委、国家能源局编制可再生能源电价附加补助资金年度收支预算。　　**第十一条**　可再生能源电价附加补助资金原则上实行按季预拨、年终清算。省级电网企业、地方独立电网企业根据本级电网覆盖范围内的列入可再生能源电价附加资金补助目录的并网发电项目和接网工程有关情况，于每季度第三个月10日前提出下季度可再生能源电价附加补助资金申请表（格式见附2），经所在地省级财政、价格、能源主管部门审核后，报财政部、国家发展改革委、国家能源局。　　公共可再生能源独立电力系统项目于年度终了后随清算报告一并提出资金申请。　　**第十二条**　财政部根据可再生能源电价附加收入、省级电网企业和地方独立电网企业资金申请等情况，将可再生能源电价附加补助资金拨付到省级财政部门。省级财政部门按照国库管理制度有关规定及时拨付资金。　　**第十三条**　省级电网企业、地方独立电网企业应根据可再生能源上网电价和实际收购的可再生能源发电上网电量，按月与可再生能源发电企业结算电费。　　**第十四条**　年度终了后1个月内，省级电网企业、地方独立电网企业、公共可再生能源独立电力系统项目单位，应编制上年度可再生能源电价附加补助资金清算申请表（格式见附3），报省级财政、价格、能源主管部门，并提交全年电费结算单或电量结算单等相关证明材料。　　**第十五条**　省级财政、价格、能源主管部门对企业上报材料进行初步审核，提出初审意见，上报财政部、国家发展改革委、国家能源局。　　**第十六条**　财政部会同国家发展改革委、国家能源局组织审核地方上报材料，并对补助资金进行清算。**第五章　附　则**　　**第十七条**　本办法由财政部会同国家发展改革委、国家能源局负责解释。　　**第十八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2012年可再生能源电价附加补助资金的申报、审核、拨付等按本办法执行。　　附：1.可再生能源电价附加资金补助目录申报表　　　　2.可再生能源电价附加补助资金季度申报表　　　　3.可再生能源电价附加补助资金清算申报表  |